

「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장세구 의원

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 3년인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제한 기한 변경(안 제3조제1항제1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8조제2항제8호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시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‘3년’에서 ‘5년’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고가 장비로 인한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나 일부 농업인에게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,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지원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·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.